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0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강승수, 김영길, 김춘남, 안주찬, 양진오
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6일

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정의(안 제2조)

○ 지원 대상(안 제3조)

(현행)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가구

(변경)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
보험료 이하인 가구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1. 12. ~ 11. 19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
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
공백 방지를 위해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, 등록
장애인 가구, 한부모 가족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이며, 매년 상승할
것으로 예상되는 최저보험료를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
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의료권 보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
판단되어,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조례와 우리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조례상 지원대상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되지 않아 도비 지원금은 동일한 반면 시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